

부산지방법원 2021. 12. 2 선고 2020가단34723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

대한민국

피 고

AAA

변 론 종 결

2021. 09. 30.

판 결 선 고

2021. 12. 0

주 문

1.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목록 제1~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0. 10.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.
2. 피고는 정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. . .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별지 목록 제2~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AA등기소 20. . .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,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B등기소 20. . .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청구취지 제2항 중 ‘BB지방법원 BBB등기소 20. . . 접수’는 ‘BB지방법원 BBB등기소 20. . . 접수’의 오키로 보이므로 정정한다)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정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

1) 정는 2019. 6. 29. 주에게 자신 소유 구 동 2306 강변타운 제717동 제1803호 아파트를 매매대금 482,000,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, 2019. 9. 17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(이하 ‘제1매매계약’이라고 한다) , 2019. 11. 30. 원고에게 위 제1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. 이에 따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0. 1. 9. 정에게 양도소득세액 42,862,230원(납부기한 2020. 1. 31.)으로 결정고지하였다.

2) 정는 2019. 10. 8. 차, 유에게 자신 소유 구 2동 892 답 2975㎡ 중 공유지분 2분의 1을 매매대금 305,000,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, 2019. 10. 14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(이하 ‘제2매매계약’이라고 한다), 2019. 11. 30. 위 제2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.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20. 2. 10. 정에게 양도소득세액 77,134,440원(납부기한 2020. 2. 29.)으로 결정고지하였다.

3) 정는 위 양도소득세 합계 119,996,670원(이하 원고의 입장에서는 ‘이 사건 조세채권’, 정의 입장에서는 ‘이 사건 조세채무’라고 한다)을 납부하지 않았고,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가산금 등을 포함한 그 체납세액은 제1매매계약으로 발생한 42,997,850원과 제2매매계약으로 발생한

83,497,970원을 합한 126,492,820원이다.

나. 정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및 이행

1) 정는 2019. 10. 10. 자신의 둘째 아들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~6항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을 증여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고 한다).

2) 이에 따라 정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

20. . . 접수 제호로, 별지 목록 제2~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

AA지방법원 AA등기소 20. . . 접수 제호로,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

관하여 BB지방법원 BBB등기소 20. . . 접수 제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

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6,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).

2)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인 2019. 10. 10. 이 사건 조세채권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제1매매계약으로 인한 부분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제1매매계약이 2019. 6. 29. 체결되어 2019. 9. 17. 소유권이전등기가

됨으로써 2019. 9. 30. 그 양도소득세 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다(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, 제3항 참조).

또한, 제2매매계약이 2019. 10. 8. 체결되고 2019. 10. 14.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9. 10. 31. 제2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지만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9. 10. 8. 이미 제2매매계약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인 제2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, 실제로 세무서장이 정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,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성립 여부

1) 정의 무자력 여부

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).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무 역시 정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.

갑 제7~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정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10,002,676원, 공시지가 합계 86,786,962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1,822,800원 상당의 남도 군 면 리 438-45 답 49 등 합계 88,609,762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,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119,996,67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정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

당시 소극재산이 적극 재산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2)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

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(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). 또한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더라도, 그 무상 양도로 인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.

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,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정의 적극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,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정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, 채무초과 상태인 정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. 그리고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, 세무사였던 정는 이 사건 조세채무의 과세요건과 그 액수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(정가 세무사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)을 더하여 보면, 정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,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1) 항변

가)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정씨 집안 선산 또는 문중 재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, 후손들이 조상들의 지분을 그대로 상속하여 왔을 뿐이다. 정의 첫째 아들인 정□□가 증여받아야 했으나 증여세 부담으로 증여하지 않고 있다가 정의 고령 및 투병, 정□□의 갑작스런 사망 등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. 그 후 정는 2021. 1. 4. 사망하였다.

나) 또한 피고는 정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치에 상응하는 50,182,544원을 2019. 9. 5.경 송금하였고, 정의 병원비 외에도 2019. 12.부터 현재까지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1,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바, 형식적으로 증여이기는 하나 실질은 그 대가 이상의 돈을 정

측에 지급하였다.

다) 정는 황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고, 고율의 이자 및 은행이자변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중 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다.

라)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.

2) 판단

가) 갑 제2호증, 제8호증의 2, 을 제1호증,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(1) 피고는 2019. 9. 5. 정에게 50,182,544원을 지급하였다.

(2) 피고는 2019. 12.경부터 2020. 11.경까지 매월 50만 원을 자신의 어머니 김에게 송금하였다.

(3)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.

나)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, 21~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, 위 가)항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.

(1)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정씨 집안 사람 중 정만이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,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정 단독 소유였는바, 위 부동산은 소유 형태나 위치, 용도(논, 밭)를 고려하면 선산이나 문중재산으로 보기 어렵다.

(2) 별지 목록 제2~5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외에

다른 토지들은 밭, 임야로 이용되고 있어 선산으로 보기 어렵고, 별지 목록 제2~5항 기재 부동산의 각 일부 공유지분은 경매로 매각되기도 하여, 정씨 집안이 아닌 사람이 일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.

(3) 피고가 정에게 2019. 9. 5. 지급한 50,182,544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시점과 그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고, 피고가 김에게 송금한 약 600만 원 또한 피고 주장대로 생활비로 김에게 지급한 돈으로서 부동산의 대가가 아니다.

(4) 정가 제2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 역시 제2매매계약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였는바,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과 정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.

(5) 피고는 정의 둘째 아들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19. 9. 5. 정에게 50,182,544원을 지급하였고, 정가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정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

라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

피고는,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원고가 정 측에 지급한 50,182,544원과 생활비 1,500만 원도 고려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 일부 취소 또는 가액배상(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서 피고가 정 측에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)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,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.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. 피고가 정 측에게 지급한 50,182,544원과 600만 원의 반환을

정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설령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고려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.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 따라서 피고와 정가 체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